

-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-

영업손실보상 등 보상계획 공고

안양시 고시 제2019-49(“19.3.28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0-37(“20.2.28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『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(이하 “토지등”)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토지보상법”)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손실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(권리자)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사업명	시행자	위치	면적(㎡)	사업기간
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	경기도시공사 대림산업컨소시엄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	119,122.4	2019년 ~ 72개월

2.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

구분	소재지	지 번
토지	안양시 안양동	424-145, 424-207, 449-1, 449-5, 449-6, 449-9, 449-33, 449-44, 449-50, 451-1, 451-2, 451-3, 451-4, 451-11, 451-22, 452-1, 452-2, 452-7, 452-14, 470-1, 470-2, 470-3, 470-4, 470-5, 470-8, 470-13, 470-14, 470-15, 471-1, 471-2, 471-11, 471-16, 471-17, 471-22, 471-24, 471-32, 471-34, 471-39, 582-5, 589-6, 589-46, 589-52, 590-5, 590-22, 590-23, 509-31, 590-44, 509-58, 509-68, 590-69, 590-82, 590-87, 590-130, 613-14, 613-15, 613-16, 613-20, 613-21, 613-22, 613-26, 617-11, 617-62, 617-79, 617-80, 617-92, 617-93, 617-101, 617-129, 617-131, 618-2, 618-4, 618-25, 618-29, 618-31, 618-46, 618-66, 618-76, 618-113, 618-122, 618-125, 618-131, 618-167, 618-185, 618-192, 618-214, 618-227, 618-242, 618-264, 618-313, 619-9, 619-12, 708-38, 708-124, 708-153, 708-158, 708-217, 708-305, 708-378, 710-1, 710-2, 710-5, 710-9, 710-10, 710-12, 710-13, 710-17, 710-70, 710-86, 710-89, 710-101, 710-103, 710-112, 710-123, 710-124, 710-133, 710-136, 710-137, 1273-12
필지 총계 : 118필지, 23,403.0㎡ (현금청산자 대상필지 제외)		
물건	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	
비고	구체적인 지번은 지정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[www.gico.or.kr (정보마당-보상정보)]에서 열람 가능(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)	

※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안내해 드리며 동 조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.

3.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'20. 4. 23.(목) ~ 5. 7.(목), 10:00~17:00(15일간)

※ 열람기간 중 토 · 일요일 · 공휴일 포함(경기도시공사 열람장소만 가능)

나. 열람장소

-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개발부

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 ☎ 070) 4256 - 3629

- 안양시 도시정비과 재개발2팀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(관양동) ☎ 031) 8045 - 2747

- 안양시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

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57번길18(안양동)

다. 이의신청 장소

-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개발부

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 ☎ 070) 4256-3629

라.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

- 열람기간 중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(이해관계자)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.

-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동안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,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.

4. 보상시기 : 2020년 7월 이후(추후 개별통지)

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5. 보상의 산정 및 지급 방법

가. 보상액 산정방법

- 보상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(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)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합니다.

- 보상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동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『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- 보상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(1인)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.

나. 보상금 지급방법 : 현금보상

6. 보상 절차

가.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→ 손실보상협의
→ 수용재결(협의 불성립시) →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

나.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, 「토지보상법」 제83조,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재결(또는 행정소송)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기타

가.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.

나. 주소나 거소불명,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

다.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.

라.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마.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바.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개발부 (T : 070-4256-3629, F : 031-441-122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4. 23.

경기도시공사 사장
대림산업컨소시엄